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A Model of Accreditation System for Medical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n Korea



신 양 식 |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회 위원장 / 연세의대 교수 | **Yang-Sik Shin, MD**
 Director, Accreditation Committee for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KAM
 Professor,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E-mail : ysshin@yuhs.ac

J Korean Med Assoc 2010; 53(3): 184 - 188

Abstract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s a post-graduate program in which clinicians can acquire the qualifications for special areas or techniques, after they have received a board certification in a specialty in clinical medicine. Considering the trend of increasingly sub-classified and professionalized medicine and the higher demand on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introduction of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is inevitable. However,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environment in Korea, such as the medical payment system, a possibility of undesirable outcomes should not be overlooked. An imprudent administration of the specialty board system would cause conflict and split within communi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also produce confusion among medical consumers.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subspecialty board system should proceed based on academic communications as well as organic collaboration with the parent academic society and/or the relevant academic societies. Individuals can submit an application for a subspecialty board qualification under the agreement of specialized academic societies which have already been authorized, but the authorization of the societies is determined following a rigorous assessment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An active intervention by KAMS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quality of specialty board system and preventing imprudent administration. KAMS will make the best effort to prevent distribution of unauthorized certificates and to rectify r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system.

Keywords: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Accreditation; Postgraduate education
 핵심 용어: 졸업후 교육; 세부전문의 인정;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서 론

십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생한 세부전문의제도가 환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불법적 표방을 하거나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의료계 내 반목과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이에 8년 전(2001년 2월 22일)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각 분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학회에서는 세부전공 전문의 제도는 「의학회와 관련 학회들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학문 발전 이외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의학회 산하에 세부전문의자격 인증관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26개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후 의학회에서는 유사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및 자격납발을 하지 않도록 회원학회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어서 2001년 8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는 공동명의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에는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당부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의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 및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다.

본 규정에 따르면, “세부(분과)전문”이라 함은 국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분야로 인정되고, 의학회의 회원학회로 등록된 전문분야를 말하며 “세부전문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와 세부전문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한다. 또한 “세부전문의제도”는 국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 외에 추가로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의에 대하여 그 자격을 의학회의 회원학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적으로 졸업후 교육(postgraduate education)의 일환으로서,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를 양성함으로써 그 분야의 학문적 발

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은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certification)을 위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와 세부전문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accreditation)하는 것을 말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세부전문의제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대의학은 전문과목의 세분화·초세분화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 21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의학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물론,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세부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수준 높은 양질의 전문의료 service 요구 증가도 한 몫을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를 포함한 의료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의 기본 원칙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 제3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세부전문 분야는 반드시 26개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공분야로 파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는 그 인증대상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한한다. 또한 반드시 자격 있는 교육자의 지도 하에 일정기간 동안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축적과 의료기술 습득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되어야 한다. 세부전문의 제도는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 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① 전문 또는 진료과목인 양 표방한다거나 ②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을 꾀하거나 ③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의 수단으로 또는 ④ 학회의 위상 강화 및 세 확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신청하여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및 세부전문의제도 인증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10월 현재 인증된 세부전문의 제도는 내과계와 소아청소년과계가 각각 9개를 기간(모)학회가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수부외과 및 중환자의학 등을 포함하여 20개이다.

세부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만일 각 학회가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자격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의학회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정과 수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와 인정된 세부전문의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부전문의 자격의 의미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 인정된 전문의보다 마치 상위의 자격으로 오인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재 질병, 장기, 의료기술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여러 학회에 의하여 임의로 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수많은 세부전공전문의가 출현함으로써 기존 전문의와 오해, 혼동이 야기되어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학회별로 무분별한 세부전문의제도의 도입은 임상의학의 근간인 26개 모학회의 약화,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하여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 발전을 저해하고 장벽을 쌓아 본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는 “세부전문의”의 명칭이 진료과목 표방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기득권 확보나 업무독점 및 경제적 수익증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여과하지는 취지에서 세부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관련 학회들의 동의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서론에서도 기술 하였듯이 26개 전문과목 학회 중 소속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분과 전문으로 인정하고, 해당 세부전공분과학회는 의학회의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적정 학술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모 학회 또는 소속 학회의 정관(회칙)에 포함된 세부전문 분과이어야 하며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가 모체이어야 한다. 이는 모 학회가 있는 경우 세부 전문분과학회가 반드시 모 학회의 동의를 필해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 학회와 세부 전문분과 학회와의 동의 절차를 밟은 경우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거의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에 상응하는 세부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 의학회의 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에 필요한 위의 제반사항들이 마련하고 해당 세부분과 전문학회는 모 학회 대표가 동의하여 제도인증 신청서를 대한의학회장에게 신청한다. 이러한 인증절차는 본 의회장이 위임한 위원장, 관계 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인증 운영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26개 전문과목대표를 포함한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회에서 인준하여 이루어진다. 그 후에 제도인증 절차를 통과한 세부분과전문학회는 본 의회장이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개인에게 수여하는 세부전문의 자격증은 신청 세부전문 분과학회장(또는 관련 모 학회장 명 병기)이 발행하고, 본 의회장이 인증하는 양식을 취한다.

발전적 운영 방안

현재 노출된 문제점들의 해결이 곧 미래 이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현 운영과 연관된 대내외적 문제들의 해결과 개선이 미래 바람직한 제도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 인정(board certification)은 당연히 각 학회의 소관이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다. 이에 따라 적정하고 충분한 교육과 수련이 전제되고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개설 당시 설정한 수련 교육 관련 제 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그 어떤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또한 특정 학회 가입 요구나 회비 납부 등 학회에서 별도로 제시한 다른 조건이 교육 내용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학회 내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부전문의제도의 보편적 공통 업무는 각 학회의 제도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 절차로서, 표준화 또는 연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것은 학회의 연합 기구인 의학회가 총괄 조정 및 표준화 책임을 지고자 함이며 그럼으로써 사회적 신용을 확보할 뿐 아니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들의 유일한 공식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학술기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문적 근거를 둔 세부전문의제도는 의학회의 자율적 업무로 봐야 한다.

의학회에서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 이미 일부 노출된 전문분야 간, 지역 간 또는 의사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혼란을 막아야 하는 시급함이 있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국내 제도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현 상황과 내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함이 마땅하다. 세계적으로는 세부전문의의 수련과 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측면이 부각되고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는 추세이며 상당 부분은 권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전문분야 간 상충되거나 독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체계와 수가체계에 따른 특수성에서 파생되는 전문분야 간, 지역 간 또는 개별 의사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은 항존한다. 물론 모든 회원학회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보하였고 그 후 20여 개의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증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의학회에서는 자정 차원에서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여 노력해왔으나 기초적인 각 학회 내 움직임은 물론 학회 간 또는 지역 간에 의견 취합을 하는 기회가 없어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위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법적 규제나 의료계 밖의 외부 세력으

로 관리되거나 운영되어 학문적 발전을 저해되거나 진료권의 제한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 자체 내에서 관리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 구축이 절실한 때이다. 의료계 외의 다른 기구에서 관리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가 가산점 인정이나 별도 지원에 대한 문제는 본 제도의 운영과는 별개이며 의학회가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독단적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제 간 포용을 하지 못하고 독선에 의해 기본적 의료 또는 의학의 태두리를 벗어난 분야도 대두되고 있다. 학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과 학술적 상호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세분화가 기간 전문성의 근본 위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과 술기 어느 쪽에서든 세분화되고 특성화되는 의학의 흐름은 세계적 추세임이 분명하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 정책과 수가체계에 따른 문제점은 외국의 다른 여건에서 이뤄진 기존의 연구를 통해 향배를 유추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론든 국내에서도 다발적으로 파생되고 운영될 것이 확실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작용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꾸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결 론

세부전문의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또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학의 각 분야에서 그 도입이 비록 필연적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질적 관리는 중립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의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단체인 의학회에 의해 인증절차와 함께 행해져야만 한다. 의학회 내의 전문과목학회, 세부전문학회는 물론 비회원 학회 등에 의해 임의로 또는 불순한 의도로 시도하는 유사 세부전문의자격이 남발됨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유사자격증이 보험수가와 연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된다.

무분별한 제도가 난립하고 그 배경에 학문보다는 현실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의 의식이 깔려있다면 의료계는 반복과 분열로 인하여 결국 자중지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불신을 조장함은 물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의사

모두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본 의학회는 유사한 자격증의 남발을 막고, 세부전문분야 자격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전 학회의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학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을 벗어난 세부전문의를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의료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자정 차원에서 의학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lbritton W, Bates J, Brazeau M, Busing N, Clarke J, Kendel D, McClean K, Saucier D, Waddington A, Walker D, Gray J. Generalism versus subspecialization: changes necessary in medical education. *Can J Rural Med* 2006; 11: 126-128.
2. Kempainen RR, McKone EF, Rubenfeld GD, Scott CS, Tonelli MR. Comparison of scholarly productivity of general and subspecialty clinician-educators in internal medicine. *Teach Learn Med* 2004; 16: 323-328.
3.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The regulation in the Management of Accreditation Committee for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2002. <http://www.kams.or.kr/>